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9.4.22.행정소방위원회

I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09년 4월 14일

연만흠 의원 외 6인

2. 회 부 일 자 : 2009년 4월 16일

3. 상정 및 의결일자

제279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행정소방위원회(2009. 4. 20) 상정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 질의·토론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Ⅱ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: 유인물 대체)

1. 제안이유

법제처의 「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」기준에 따른 용어 및 체계를 정비하여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제명 변경 :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
- 위원회업무 대행에 따른 중복내용 정비
 -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(안 제3조제1항)
 - 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의 직무 삭제(안 제2조, 제4조)

- 자구수정
 - 수당 등의 지급→ 수당 등(안 제7조)
 - 개최→개의, 필요시에는→필요한 경우에는 등

Ⅲ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소방수석전문위원 양권석)

- 이 개정조례안은 연만흠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지방재정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심의기능이 상이한 위원회를 하나의 위원회 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
- 「충청북도 위원회 정비계획」에 의하여 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 하고 있는 2개 위원회 중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기능을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위원회 를 정비하며, 또한 불부합한 자구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상에 이견이 없음.

Ⅳ. 질의 및 답변요지: "생 략"

Ⅴ. 토론 요지: "생 략 "

Ⅵ. 심사 결과 : 원안가결

Ⅶ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₩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IX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

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"를 "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"로 한다.

제1조 중 "제70조의 규정에 의한"을 "제70조에 따른"으로 한다.

제2조를 삭제한다.

제3조의 제목 "(위원회 기능)"을 "(구성과 기능)"으로 하고, 제2항 각호 외의 부분 중 "각호"를 "각 호"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두되, 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4조를 삭제한다.

제5조의 항과 본문은 각각 띄어쓰고, 같은 조 제2항 중 "개최"를 "개의(開議)"로 한다.

제6조 중 "필요시에는"을 "필요한 경우에는"으로 한다.

제7조의 제목 "(수당 등의 지급)"을 "(수당 등)"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문대비표

혀 햇

충청북도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「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 법시행령」제70조의 규정에 의 한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 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위원회 구성) 재정공시심의 위원회(이하"위원회"라 한다 上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 여 충청북도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.

제3조(위원회 기능) (신설)

-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하다.
 - 1.「지방재정법」제 60조의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 - 2.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 6& 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에 관한 사항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위원장은 (삭제)

개 정 안

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

법시행령」<u>제70조에 따른</u> 충청 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 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(삭제)

- 제3조(구성과 기능) ① 충청북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(이하 '위원 회"라 한다)를 두되,충청북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기능 을 대행한다.
- 심의한다.
- 1.「지방재정법」제 60조의 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
- 2.「지방재정법시행령」제 6& 의 공통공시 및 특수공시 선정 에 관한 사항

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.

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회의) ①회의는 정기회 및 제5조(회의) ①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 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 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의 과 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.

제7조(수당 등의 지급) 위원회 위 제7조(수당 등) 위원회 위원에 대 원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터 시행한다.
- ②(다른 조례의 폐지) 종전의 충 청북도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」 는 이를 폐지한다.

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저기회 는 매년 1회 개의(開議)하고 임 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개의(開議)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.

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 |제6조(의견의 청취)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」가 정하 | 실비변상 조례 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재정법

제60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.

- 1. 세입·세출예산의 집행상황
- 2.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
- 3. 지방채·일시차입금 등 채무의 현재액
- 4. 채권관리현황
- 5. 기금운용현황
- 6.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
- 7.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정보
- 8.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
-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·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재정법시행령

- 제68조(재정운용상황의 공시방법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하는 경우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(이하 "공통공시"라 한다)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재정운용상항에 대한 공시(이하 "특수공시"라 한다)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②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법 제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
 - 2. 지방재정분석·진단의 결과
 - 3. 감사원 등 감사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 결과
 - 4.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 - ③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

회가 정한다.

-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당해 지역을 배포지역으로 하는 일간지 등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.
- ⑤그 밖에 공시의 서식 및 작성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다.
- 제69조(**재정운용상황의 공시시기**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는 매년 8월에 하여야 한다.
 -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입결손으로 인하여 실행예산을 운용한 경우 또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기어 충당·사용한 경우 등 새로운 수요발생시 수시로 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.
- 제70조(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0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지방재 정공시심의위원회(이하 이 조에서 "공시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하여야 한다.
 - ②공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관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71조(**재정운용상황의 보고**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시장·군수·자치구의 구청장은 시·도지사를 거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72조(**공시에 대한 조치 등**)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된 재정운용상황 공시결과를 분석·평가하여 적절한 지도를 하거나 재정분석에 반영할 수 있다
 -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·평가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여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다시 공시하도록 권고하고, 공시한 결과가 미흡하거나 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공시할 수 있다.